

아시아 최초 한국 인권환경실사법 발의안 소개 웹이나

2023.
SEP.19.
TUE
14: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 동시 중계

문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사무국
ktncwatch@gmail.com

주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4:00-14:10	<p>인사말 및 법안 발의 배경·취지 소개</p> <p>- 김동현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p>
발제	14:10-15:10	<p>공급망에서 한국기업의 인권환경침해 사례: 삼성 베트남 공장 사례를 중심으로</p> <p>- 이상수 상임활동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p>
		<p>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p> <p>- 신유정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법무법인지향)</p>
		<p>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I</p> <p>- 김두나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p>
		<p>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II</p> <p>- 박영아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p>
질의응답	15:10-15:30	질의응답 및 폐회

배경 및 취지

전 세계적으로 극한기후에 신음한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일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은 인류가 탈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량생산·소비 체제를 유지한 채 이를 가동할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대규모 자원착취와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녹색경제'로 분류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리스크가 이를 입증합니다.

이에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개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인권환경실사법 제정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EU차원에서도 EU 전체에 적용될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 차원에서 실사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9월 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관련법을 발의 했습니다.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발의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한 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공급망 이슈를 다년간 대응해 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 한국의 인권실사 제도화 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제1:

**공급망에서 한국기업의
인권환경침해 사례:
삼성 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수 상임활동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공급망에서 한국기업의 인권환경침해 사례: 삼성 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홈페이지 <https://sharps.or.kr/>

이메일 sharps@hanmail.net

<발표 순서>

-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 중대재해 알권리
 - 삼성의 조직적 사고 은폐
- ◆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 안전보건정보 알권리
- ◆ 메탄올 집단 중독 사고 재발
 -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업체 -
- ◆ 환경안전보건 문제 방치
 -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 중대재해 알권리 -

2018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서 이산화탄소 누출...3명 사상

송고시간 | 2018-09-04 19:20



최해민 기자
기자페이지

3명 모두 협력업체 직원...1명 사망·부상자 2명은 의식불명
"119개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로 연결된 배관이 터진 듯"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최중호 강영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고는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든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분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연합뉴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서 이산화탄소 누출...1명 사망(종합)
기사입력 2014.03.27. 오전 11:47 최종수정 2014.03.27. 오후 3:14 스포츠 | [전문기자 - 실황](#)

1 26

요약본 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설명하는 삼성전자 상무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7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삼성전자 수원환경안전팀 이기혁 상무가 사고 현장 평면도를 통해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방설비 '화재발생' 감지 오작동 소화용 거채 살포 추정

“이산화탄소를
안전한 청정약제로
교체하라”

- 노동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2014년 점검 완료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련 간담회 자료

5) 2014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의 범위 및 이행점검 여부 (이산화탄소를 청정약제로, 1인 작업을 2인 1조로 교체)

○ 행정명령은 사업장 단위*로 시행되는 것으로 2014년 당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으며,

- 회사측은 복지관 등 6개소에 청정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설비 신설과 생산기술연구소 별관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교체, 시설 운영 인력충원 및 2조 2교대를 3조 3교대로 변경 등 자체 개선 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함

◆ **삼성과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이 반복된 죽음을 부른 것**

: 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삼성전자의 다른 지역 사업장에는 취해지지 않아 사고 재발

대안

◆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여부 모두에 대한 비판적 감시 필요!**

◆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 삼성의 조직적 사고 은폐 '비밀주의'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능장신고' 논란

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

백혜정 입력 2018.09.06 08:00

가. 사고 당일 시간대별 경과(증 제2호증)

- 13:59 최초사고발생, 삼성전자 사업장 내 방재센터 사고인지
- 14:01 삼성 자체소방대 출동
- 14:08 요구조자 3명 발견 및 구조활동 실시(집합관실 부근)
- 14:20 요구조자 구조 및 CPR 실시
- 14:32 삼성전자 자체구급차로 3명 이송(동탄한림대병원)
- 15:43 삼성전자 → 5개 기관 신고(유선 신고)

-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한강유역환경청, 가스안전공사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고발장 중>

삼성은 두 시간 가까이 지체된 15:43분에서야 5개 기관⁴에 신고를 했는데, 삼성의 이런 늦장신고는 반복되는 사고에서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신고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했던 이 골든타임 동안의 부실한 응급조치가 부상자를 살릴 수도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마지막까지도 소방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⁵ 삼성의 신고를 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소식을 전달했고, 화학물질안전원이 소방청에 보고를 한 것이 오후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전화를 했을 때, 삼성의 반응은 '부상자 세 명 중 두 명이 의식을 찾았다'는 거짓보고였습니다. 삼성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던 소방당국은 사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6) 제19조(화재 등의 방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방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Seq=303074&efYd=201808100000>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고발장 중>

삼성은 화관법 상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⁷ 화학사고 신고규정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사고 발생 15분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⁸ 과거 삼성전자의 불산누출 사고처럼 작업현장과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사고의 특성 때문에 더욱 엄격한 신고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환경부도 이번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화학사고라는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⁹ 삼성전자에서 화학사고가 반복되어 왔으며, 드러난 사고에서는 매번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고 때마다 늦장신고로 신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7)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관례별지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 계획에 따라 위생방재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교통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바친 것으로 본다.

8)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시행 2018. 2. 12.] [환경부예규 제632호, 2018. 2. 12, 일부개정]
제43조(신고 기준) ① 별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즉시는 15분 이내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고발장 중>



**"쓰러진 요원은 구조하다 탈진한 것,
로비는 가스 누출 없어 현장 통제 안 해"**

이번 사고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녹장신고입니다. 삼성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역력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사고 당시의 CCTV를 보면, 복수의 구조요원들이 계속해서 어딘가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박한 현장 상황때문이거나 구조요원들의 자제 판단만으로 신고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고발장 중>

SAMSUNG SECRET

(규칙)DS 재난대응계획

녹장신고

2018. 08.16

기흥/화성/평택단지
환경안전팀

4.8.3. 대외기관신고

법정기준에 따른 환경부/소방서/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사고유형 별 책임부서장제도를 운영한다.

사고구분	신고기관	담당자
화재/가스 사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방재그룹장
안전 사고	고용노동부	안전그룹장
환경 사고	환경부	환경그룹장
인사 사고	경찰서	단지 인사팀

첨부 3. 비상대응본부 경영진 임무

구분	집결장소	역할
단지	사고현장 → 비상대응본부 (위기상황선포 後)	- 대표이사 사고 보고 (S메세지 혹은 구루보고) - 위기상황선포 승인 - 대외 관공서 신고여부 승인 - 비상대응본부 소집 및 지휘
제조센터, FAB팀	사고현장 → 라인상황실 (위기상황선포 後) * 필요 시 비상대응본부	- 라인 대기 인력, 생산기대 현황 파악 - 사고지역 생산 중단 의사결정 - 생산 복구 계획 지휘
환경안전팀	사고현장 → 비상대응본부 (위기상황선포 後)	- 위기상황선포 건의 - 단지장 승인 후 관공서 신고 지시 - 상황종료 後 라인 입실 의사결정 - 단지장 브리핑 및 부제시 비상대응본부 지휘 - 관공서 방문시 환경브리핑(일반과제)



(규칙)DS 재난대응계획

정보통제
2018. 08.16

기흥/화성/평택단지
환경안전팀

4.9. 주민홍보 및 언론대응, 사내홍보

○ 위기상황 발생시 언론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위기상황이란 BCF 규정상 2단계로 반드시 시설들과 연결되어 발생한 화재/폭발, 가스/케미컬 유출, 정전, 자연재해 등 돌발적이며 비정상적인 사고로 인해 물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4.9.2. 언론대응

가. 초동대응

○ 신속히(초기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1~2시간 이내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전 공업원에 대해 보안을 강화한다.

다. 언론대응자료작성

- 정보를 집권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지양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가?
- 언급해야 하는 내용,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가?



(규칙)DS 재난대응계획

사고은폐
2018. 08.16

기흥/화성/평택단지
환경안전팀

4.2. 위기상황 정의

위기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삼성전자(주) DS부문에 의한 리스크 및 관련상황 변화를 초기대응단계와 1,2단계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고, 2단계 시 위기상황으로 간주한다.

다. 2단계 (Red) : 삼성전자(주) DS부문의 리스크가 경영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기요, 즉시, 위기관리체제로 전환 및 운영하는 단계이다. 환경안전 사고등급 분류기준 C를 이상 해당된다. 단, C를 이상의 사고 중 대의 이유가 없는 단일 사고는 1단계(Yellow) 일부 프로세스로 처리한다.

- 삼성전자(주) DS부문에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로 임직원 사망, 부상 등이 발생하여 내/외부고객 지원이 중단될 경우
- 삼성전자(주) DS부문에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생산라인이 마비되어 내/외부고객 지원이 중단될 경우
-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사회 법규, 유해 위반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 라인단위로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나 라인 외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대의 이유사항이 발생한 경우
- 유독물(액체)이 200리터 이상 누출되어 사업장 외부로 유출된 경우
- 독성가스(기체)가 부지경계선에서 TLV-TWA이상 확산된 경우
- 유해리터 공급라인의 파손으로 라인 내 공급이 중단된 경우
- 1개 라인이상 정전, 질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예: 전염)
- 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산시스템 장애/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대응본부가 가동되고 위기관리체제로 운영되는 단계이다.

• 사고 등급 분류 기준은 첨부 2, 참조.

◆삼성전자 재난대응규칙

- 재난대응? 재난 이슈 대응!
 - 생명 구조? 기업이미지 관리 위한 사고 은폐!
- 재난 대응을 기업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



- ◆ 사고은폐, 누장신고 처벌 강화
- ◆ 재난 대응에 국가가 나서야
- ◆ 소방, 의료기관이 기업의 위험에 대해 알아야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 안전보건정보 알권리 -

I. 사고개요

2013. 01. 28(월) 7:50분경 경기도 화성소재 00전자(주)의 케미컬 공급실에서 50% 불산탱크 하부 밸브에 대한 누출 방지조치 작업을 하던 ○○○서비스(주) 소속 야간작업자 4명과 누출방지조치를 위해 긴급 투입된 작업자 1명이 누출된 불산흙에 노출되어 그 중 1명이 치료 중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진 1] 누출이 발생한 불산탱크 하부 모습

고용부 "불산누출 삼성공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고용부는 조사결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누출에 대비한 긴급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설치돼있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는 통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다는 것은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보건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협의체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설비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1934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 하는 등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임을 감안해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법 "삼성 사업장 안전진단 결과, 영업비밀 빼고 공개"

송고시간 | 2017-10-25 23:14



송진원 기자
010-3600031

1심보다 공개 범위 넓혀... "국민 알권리가 영업상 이익 앞선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대폭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영업비밀을 제외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청은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자 화성, 기흥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안전보건진단에 나섰다.



◆ 화학물질 관리

- 상당한 문제점이 거의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 관찰됨
- 가스누출 감지 장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 감지 불가능
- 가스누출 감지 장치가 수시로 오작동 혹은 아예 없음
- 가스 배출 장치 없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
- 설비보수 등 고농도 노출작업에 대한 관리가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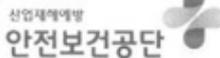
◆ 기타

- 안전보건 조치가 형식적
- 실질적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안전보건 담당자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물질의 성분을 영업비밀로 분류한 경우가 너무 많음
- 영업비밀이 될 수 없는 독성 물질도 영업비밀로 분류
- 문제점 축소를 지향하는 왜곡된 문화가 상당히 강함
- 종합진단이 실시되는 중에도 삼성전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음

종합진단보고서

—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

2013. 5.



◆ 이산화탄소 관련

7-5.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이해 부족

(1) 현황 및 문제점

- SR-1, SR-3 케미칼실, 수전실, 먼진실에 CO₂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가스방출시 질식위험으로 절대 출입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CO₂의 독성에 대한 내용이 간과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해당 상태에서의 정확한 위험을 언급하지 못함.
- CO₂의 물질위험, 질식사고의 농도별 차이에 대해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CO₂를 공급하는 회사의 MSDS 내용에 CO₂의 독성에 대해 충분한 언급되어 있지 못함.

(2) 개선방안

- CO₂방출시 기본적으로 34%의 설계농도로 방출되며, 이 경우 산소의 농도는 14%(21 x (1-0.34)) 밖에 저하되지 않으므로 전항에 언급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망사고의 가능성은 거의 없음. 반면, CO₂는 독성에 의한 LC50 값이 있으며 소화약제 방출시 이 농도이상 도달함에 따라 사망이 발생하게 됨.
- CO₂ 소화설비의 방출에 따른 독성과 사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
- 공급자의 MSDS가 불충분한 경우 공급자가 보완토록 요청하거나, 내부적으로 보완하여 사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종합진단보고서

—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

2013. 5.



○ 물질의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본지식의 바탕하에서 자신이 폭로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함. 과거 실시된 물질안전보건 교육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과 이행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전검토와 실시내용 확인이 필요함.

○ MSDS의 전체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교육은 실효성이 없으며,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지식, MSDS의 내용이 수행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시키시기 바람.

관련규격 및 참고자료

1. CO₂ LC50

6700ppm(0.6%)/1hr (LC50, rat)
20000ppm(2%)/4hr (LC50, mouse)
7500ppm(0.75%)/1hr (LC50, monkey)
9600ppm(0.96%)/1hr (LC50, dog)

2. CO₂ 특성

- 5%이상의 CO₂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됨
- 10%에서는 심한구토와 함께 혼절
- 20%를 넘는 경우 즉사(따라서 CO₂ 소화약제 방출농도인 34%에 노출 또는 피난지체시 거의 예외 없는 사망발생)

◆ 안전보건진단보고서(2013.5) 비공개 - 위험 은폐

알권리

- ◆ 생명 건강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
-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당사자 알권리 강화

1) (정보공개법)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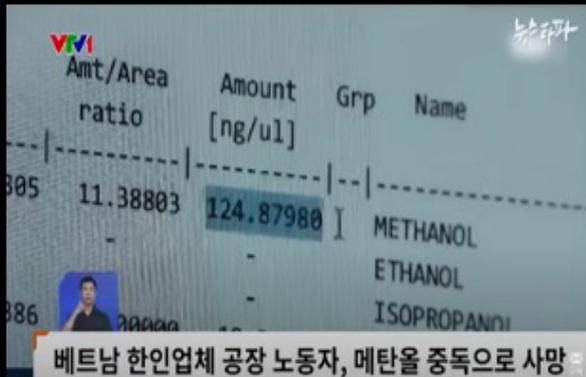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메탄올 집단 중독 사고 재발

-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업체 -

SAMSUNG

메탄올 중독 사고 : 삼성 베트남 협력업체



laboratory report showing test results for Methanol, Ethanol, and Isopropanol. The Methanol result is 124.87980 ng/ul.

Amt/Area ratio	Amount [ng/ul]	Grp	Name
11.38803	124.87980		METHANOL
			ETHANOL
			ISOPROPANOL

베트남 한인업체 공장 노동자,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



- 1명 사망, 10대 노동자 3명 뇌와 시력 손상. 37명 메탄올 중독 판정
- 노동자들의 악취, 두통, 피로 호소를 무시. 실신, 입원 후에도 회사는 무대처.
- 회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이 독극물 관리소에 알코올을 신고해서 드러남
- 메탄올은 삼성이 협력사에서 '냉각'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규제 물질

SAMSUNG

메탄올 중독 사고 : 2016년 한국의 삼성협력업체

- 2016년 2~30대 노동자 7명의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뇌출혈 등 뇌손상
- 삼성과 LG 핸드폰 금속 부품 가공에 '냉각' 용도로 메탄올 사용
- 에탄올보다 싼 가격 때문에 사용된 메탄올
- 차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 미비
- 노동자들의 중독증세에도 회사가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움

→ 장소가 베트남이라는 점만 빼면 동일한 사고가 더 큰 규모로 반복

SAMSUNG

삼성의 대책 : 친환경 냉각제를 국내외 모든 협력사에 적용 완료

• 2017년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

친환경 냉각제 개발 사례

삼성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자감을 위해 사업장뿐 아니라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체제의 개발과 유해물질 사용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협력사의 현장진단을 통해 예탄올을 취급상 위험성이 낮은 예탄올로 우선 대체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보호구 착용 불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냉각제를 개발하여 2016년 기준 국내외의 모든 협력사에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Case

SAMSUNG

삼성의 대책 : 메탄올을 '냉각' 용도로 사용 금지, 삼성전자 및 협력회사

• 2019년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 FIFTY YEAR
JOURNE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SAMSUNG

#	구분	Cas No.	물질명	사용제한용도1)	관련기준	대상
1	금지	71-43-2	벤젠	모든 용도	산안법(특별/C/M), IARC, 국내 기준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2	금지	110-54-3	n-헥산	모든 용도	산안법(관리/C), EU 생식독성, 국내 기준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3	제한	68-12-2	디메틸포름아이드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R), IARC(2A), EU 생식독성(1B)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4	제한	75-52-5	니트로메탄	세척, 말지	산안법(관리/C), IARC(2B)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5	제한	67-66-3	클로로폼	세척, 말지	산안법(관리/C/R), IARC(2B), EU 생식독성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6	제한	79-01-6	TCE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C/M), IARC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7	제한	108-88-3	톨루엔	세척, 말지	산안법(관리/R), EU 생식독성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8	제한	127-18-4	PCE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C), IARC(2A)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9	제한	67-56-1	메탄올	세척, 말지, 냉각	냉각 산안법(관리/C)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10	제한	108-94-1	시클로헥사논	세척, 말지	산안법(관리/C)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11	제한	75-09-02	디클로로메탄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C), IARC(2A)	삼성전자 전 사업장, 협력회사
12	제한	75-21-8	산중메틸렌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C,M), IARC(1)	삼성전자 전 사업장
13	제한	109-86-4	2-메톡시에탄올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R)	삼성전자 전 사업장
14	제한	110-49-6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R)	삼성전자 전 사업장
15	제한	110-80-5	2-에톡시에탄올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R)	삼성전자 전 사업장
16	제한	111-15-9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R)	삼성전자 전 사업장
17	제한	50-00-0	포름알데하이드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C,M) IARC(1)	삼성전자 전 사업장
18	제한	111-96-6	비스(2-메톡시에틸)에테르	세척, 말지	EU 생식독성(1B)	삼성전자 전 사업장
19	제한	78-87-5	1,2-디클로로프로판	세척, 말지	산안법(관리 C), IARC(1)	삼성전자 전 사업장
20	제한	106-99-0	1,3-부타디엔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C, R), IARC(1)	삼성전자 전 사업장
21	제한	127-19-5	N,N-디메틸아세르아미드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R)	삼성전자 전 사업장
22	제한	106-94-5	1-프로모프로판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C, R), IARC(2B)	삼성전자 전 사업장
23	제한	75-26-3	2-프로모프로판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R)	삼성전자 전 사업장
24	제한	107-13-1	에크릴로니트릴	세척, 말지	산안법(특별/관리 C), IARC(2B)	삼성전자 전 사업장
25	제한	75-01-04	염화비닐	세척, 말지	산안법(관리 C), IARC(1)	삼성전자 전 사업장

톨루엔, 크실렌, 시클로헥사논,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규제물질이 협력회사에서 사용됨

[한국, 국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삼성본관 앞, 2023. 3. 29.]

삼성엔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삼성엔 메탄을 실명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삼성엔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엔 공급망 내에서 **메탄**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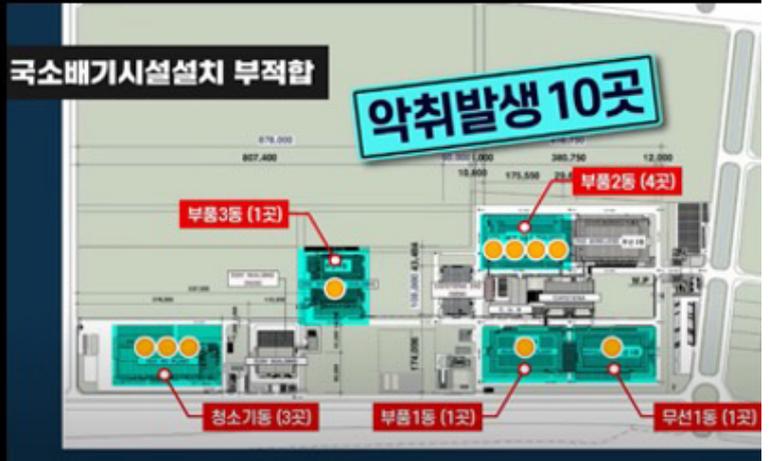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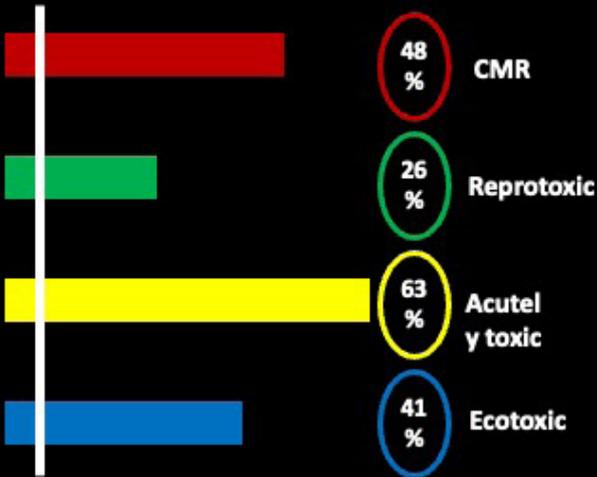
환경안전보건 문제 방치

-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

SAMSUNG

박닌공장 독성 화학물질 사용실태

“박닌공장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악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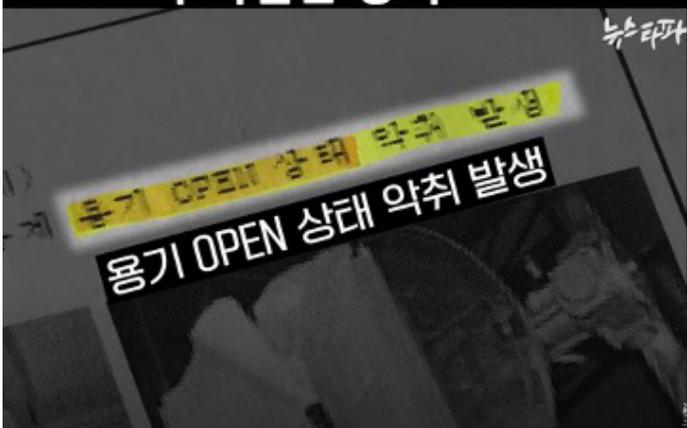


SAMSUNG

박닌 공장의 “악취”

유기용제의 부적절한 방치

부적절한 보호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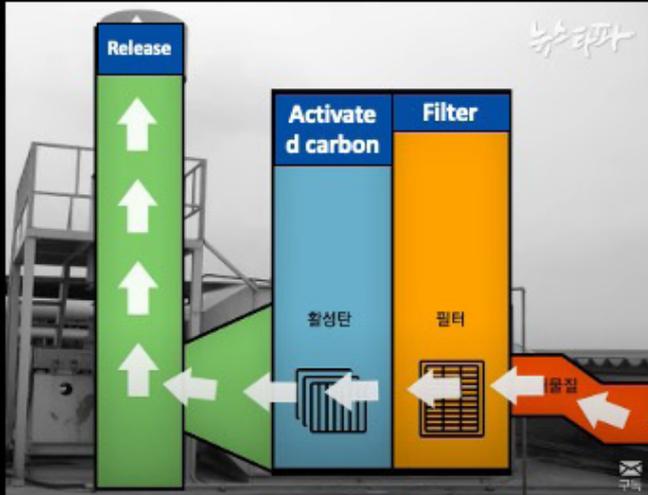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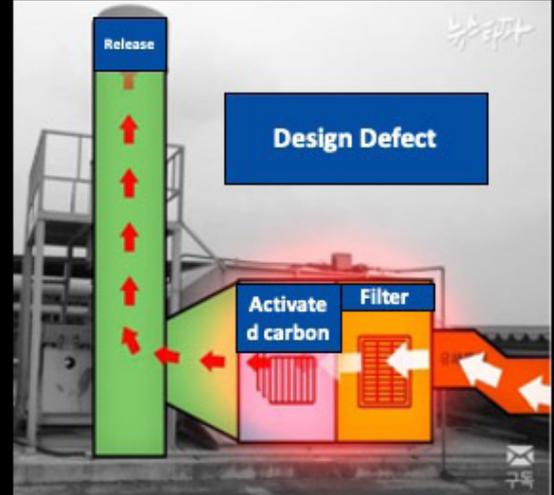
"A Bad Smell" outside the Bac Ninh factory is **air pollution**

Required

Reality



Vs.



Over 8 years of operation, inadequate air pollution control

반올림을 후원해주세요.

<https://webcm30.webcm.co.kr/system/platform/page1-1.html?id=hrfund&gid=sharps>

후원하기

반올림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을 정기, 일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QR 코드 찍기 또는 아래 버튼 누르기를 하시면 정기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정기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올림은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반올림을 지정하여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에 기부하시면, 회원님의 CMS 출금계좌와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사업을 통해 단체에 배분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금액

일시불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반올림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02-3496-5067 (반올림 전화)

sharps@hanmail.net (이메일)



병들지 않고 죽지않고 일할 권리!!!
The right to work without getting sick and not dying!!!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Right to be treated if you're sick!!!
아프지 않도록 쉴 권리!!!
The right to rest so that you don't get sick!!!



< 참고자료 >

직업병 인정 투쟁

Struggle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The first semiconductor occupational disease victim, the late Ms. Hwang yumi, and her father Mr. Hwang Sangki,

"My daughter developed leukemia while making semiconductors at Samsung."



돈으로 피해자를 회유한 삼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Press conference condemning Samsung for trying to bribe victims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05.html

h21.hani.co.kr

[단독] 백혈병 피해 유족에 '우수고객' 조롱한 삼성 반도체 산재 첫 인정 판결 7년 뒤 뒤흔은 합의 이유 보여주는 문건들... 직업병 직시는 뒷전, 피해자-시민단체 이간질에 열중

우수고객 명단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p>이름: [Blurred] 직업: [Blurred] 주소: [Blurred] 연락처: [Blurred]</p>

삼성의 직업병 대응 관련 [한겨레 21] 기사 주요 내용

1) 직업병 문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룹 미전실에서 대응**해왔음.

2) **문제 자체의 진위, 피해, 예방의 관점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관점에서 논의**

- 문제 자체에 해결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화를 제의했다, 미뤘다 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임.

3) **12년 1월 18일, 이미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존재함을 인지**

- 인사지원팀장 정금용, **“결론적으로 보면, 전자 반도체의 백혈병 발병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4) **직업병 피해자와 활동가 이간질 시도**

- 13. 9. 12. “반올림 4차 미팅 : 이종란 주도로는 소득없이 명분 싸움만 한다는 점을 유족들에게 강조하여 결별 유도”

- 13. 9. 16. “반올림 협의, 유족에게 이종란에 대한 불신을 심어 이격되도록 유도”

- 13. 9. 26. “백혈병 UN 진정 관련 : 협상 중에 UN 진정 등 정치 이슈화는 도의에 어긋남을 엄중 항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이종란의 계획이니 이를 유족측에 알려서 간극을 벌이도록 할 것”

5) **재판 개입 정황**

그룹 내 주요 관련단위에 “2심 소송을 당길지 미룰지?”에 대한 의견을 주문

1023일간의 삼성본관 앞 반올림 농성에 참여한 피해자와 어머니

A victim and her mother at SHARPS' 1023-day sit-in protest in front of Samsung headquarters



Demands on Samsung's occupational diseases

- **Make a sincere apology**
- **Compensate** without excluding victims
- **Keep your promise on a social dia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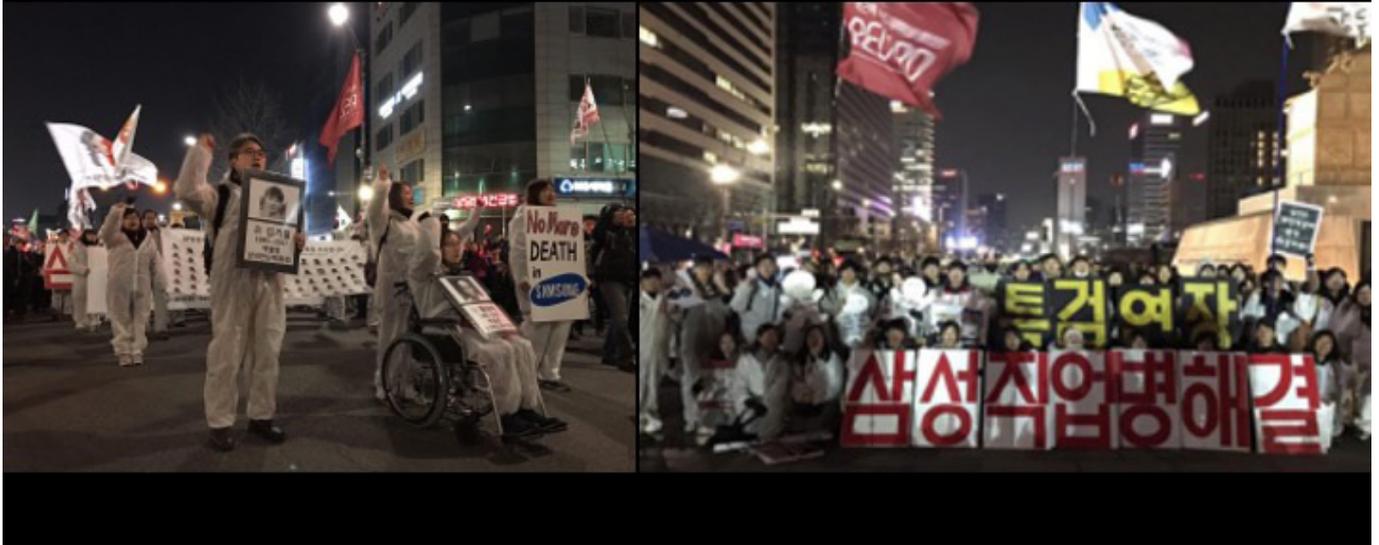
끝없이 이어진 연대, Endless solidarity



국제노총,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해외 강연과 영상상영회, overseas lectures and film shows
UN 특별보고관 면담, UN Special Rapporteur interview



촛불항쟁 : 대통령 탄핵과 이재용 구속
"삼성직업병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투쟁이 만든 변화들
Changes made by the struggle

반올림과 삼성의 합의, 11년이 걸렸다!!



2018년 11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 <http://www.ohse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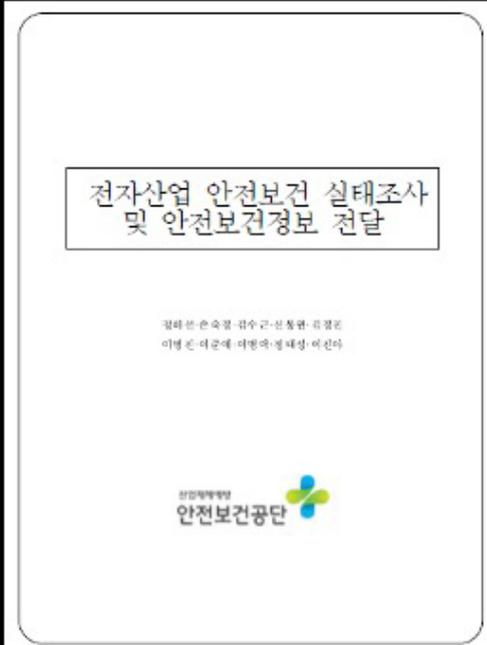
지원보상 제도 이해 필수 안내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지원보상 신청/확인 로그인

“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LCD사업장 근무자들의 질병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은 독립기구로서, 2018년 11월 23일 합의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역할병 등 질환 발생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중위협회의 중재신청서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문자를 수행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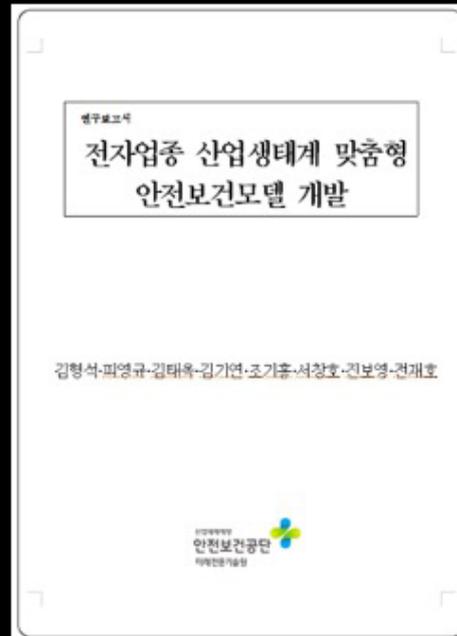
보상 절차

신청/접수 > 심의 > 확정 > 지급/종료

500억 기부로 만들어진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 전자산업센터



중소규모 전자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반도체 산업 외주 협력업체 위험작업 연구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자 하는 목적”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첨단산업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가 본래 목적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직업환경상 유해요소를 규명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많은 화학물질, 방사선, 저주파자기장, 야간교대근무, 고온 노출, 과로,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 등 복합노출에 의한 상가작용/상승작용을 고려해야”

정부의 공식조사로 인정된 반도체 직업병!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 암 질환 중심 -

김은영 · 이성림 · 서희경 · 전교현 · 박승우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암 피해 : 3,442명
■ 암 사망 : 1,178명

- 조사대상 : 반도체 6개 회사 전현직
201,057명

- 기간 : 1998년~2015/16년

- 영코테크놀로지코리아 13,887명, 케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4,550명,
케이이씨(주) 9,586명, DB하이텍(주) 7,746명, SK하이닉스(주)
64,115명, 삼성전자(주) 101,173명으로 총 201,057명

과제

정부의 조사통계는 빙산의 일각! 드러나지 않은 피해와 죽음!

■ 암 피해 : 3,442명

■ 암 사망 : 1,178명

- 1998~2016년

- 직업성 암

반도체

Vs.

- 1998년 이전, 2016년 이후

- 직업성 암 이외의 질병 : 희귀질환, 생식/2세 질환, 뇌심, 근골, 정신질환

- 반도체 산업 이외의 피해 :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배터리, 전자부품 등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안전보건사업
Workers participate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rojects



발제2:

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

신유정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법무법인 지향



기업인권실사법안 주요내용 소개①

인권실사의무의 범위와 내용

신유정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법무법인 지향



I. 법안의 적용 범위



1. 인권환경위험의 범위

- 시적 범위: 이미 발생한 부정적 영향 +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 영향
- 규범적 범위:
 - ① 다음 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헌법 및 법률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별표1)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별표2)
 - ② 다음 규범이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 헌법 및 법률
 - 국제환경협약(별표3) 및 이를 이행하는 법률
 - ③ 그 밖에 기후위기와 같이 인권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권위험의 범위 – background

- UNGP 이행원칙 12. 주석
 -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은 관련 관할권내 국내 법규에 정의되어 있는 법적 책임의 질문과는 다르다.
 -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인권의 공식적 목록은 국제권리장전과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의 바탕이 된 ILO의 8개 핵심 규약에 관계된 기본적인 권리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V. 인권 장 해설
 - 국가가 인권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국제 인권존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도(...) 기업에 요구되는 인권존중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나 기업 운영의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국제인권장전'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참조해야 한다.

환경위험의 범위 – background

- 유엔 총회 결의 (A/76/L.75)
 -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한다.
 -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다른 권리(...중략..)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법 원칙에 따른 다자간 환경 협약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국제기구, **기업**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을 채택하고 (중략) 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위험의 범위 – background

- EU 공급망실사지침 (EU의회 수정안, 2023. 6.)
 - 제6조 제1항
회원국은 기업이 자신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자회사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 자회사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운영, 자회사 및 비즈니스 관계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하며(후략)
 - 제3조 (b)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란 부록 제1부 18항 및 19항과 부록 제2부에 명시된 관련 국제규범의 관련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후략).

2. 인적 범위 - (1)

- 인권환경실사의무의 수범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 직접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 확대 가능
- 모든 기업의 의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아동노동 연루 우려 or
분쟁지역에서 기업활동하는 경우 인권위험 식별 의무

인적 범위 - background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활동기업 6,820,850개 중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은 1,904개로 0.03% 미만,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기업수 매출 1,500억원 이상 기업은 2,589로 0.04% 미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UNGP 이행원칙 14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규모, 업종, 운영 환경, 소유,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후략)
- EU 공급망 실사지침안 Explanatory Memorandum
 - 중소기업은 실사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드는 재정적, 관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기존 실사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사 노하우나 전문 인력이 없으며, 실사 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 범위 - background

EU 공급망 실사지침 EU의회 수정안 (202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 250명 이상이며 연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2) 직원 500명 이상이며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의 최종 모회사 • 외국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매출 1억5,000만유로 이상, EU내 매출 4,000만유로 이상 (2) 직원 500명 이상, 전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 EU내 매출 4,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의 최종 모회사
프랑스 상법 제225-10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임직원 5,000명 이상 또는 전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 자회사 근로자수 포함
독일 공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임직원 3,000명 이상 (제1조 제1항) -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근로자수 및 파견근로자 수 포함 • 2024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확대

2. 인적 범위 - (2)

- 인권환경실사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업활동
 - 기업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 + 이에 부수되는 행위
 - 기업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종속 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위 행위
 -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일 때,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 행위
- 핵심적 질문 - 기업이 인권환경위험을 일으키는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2. 인적 범위 –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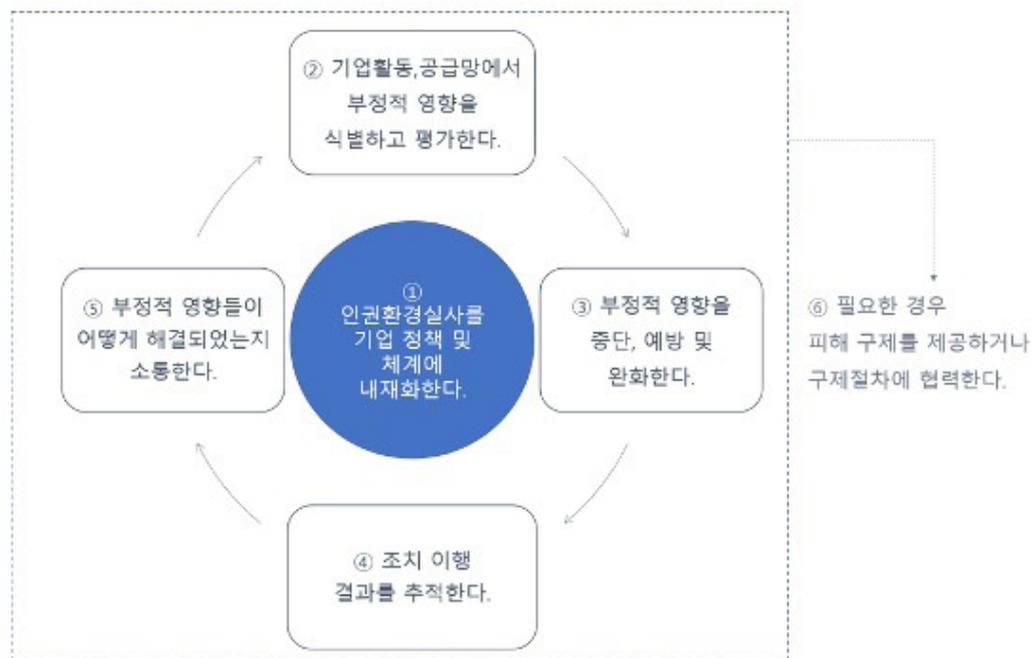
- EU 공급망 실사지침 (EU의회 수정안, 2023. 6.) 제6조
 - 기업이 자체 운영,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자회사(subsidiaries)***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 운영,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하며(후략)
 - 자회사 → 004/109/EC 지침 제2조 제1항 제(f)항 → **자연인 또는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또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 포함
- 독일 공급망법 제2조(6)
 - 결합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모회사의 사업영역으로 고려된다.

3. 공급망의 정의

- 기업이 재화(금융투자상품 포함)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를 할 때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외 경제 주체들과 그 기업이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를 의미함(제2조 제5호)
- 독일 공급망법 제2조(5)
 - (5) 이 법에서 공급망은 기업의 모든 제품 및 용역과 관련된다. 이것은 원료 획득부터 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로의 공급에까지, 제품 생산과 용역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고유한 사업영역에서의 기업활동
 2. 직접 공급자의 활동
 3. 간접 공급자의 활동

II. 인권환경실사의무의 내용

Intro. 인권환경실사: 지속적 과정



*그림: OECD 인권실사 가이드라인 참조

1. 기업 내 인권절차 이행체계 구축

- 인권환경실사 이행정책의 수립(제6조 제1항 제1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제6조 제1항 제3호)
- 인권환경실사 책임자의 지정(6조 제1항 제3조)
- 고충처리기구의 설치(제6조 제1항 제3호)

1. 기업 내 인권절차 이행체계 구축

-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기업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제7조)
 -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시에 대한 **감독책임**(제8조 제1항)
 - 위 감독책임을 고의·과실로 게을리하여, 기업의 법위반 → 이해관계자 손해 발생시, 기업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제8조 제2항)
-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 참조

2.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 정기적 식별의무:
 - 최소한 연 1회
 - 자신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 환경위험의 확인
 - 이해관계자 통해 인식 시 지체없이 확인
- 수시 식별의무:
 -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아동노동 등 관여 우려가 있는 때
- 사업 착수 전 식별의무:
 -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 우선순위의 부여: **심각성과 발생 개연성이 가장 높은 순으로**

3. 인권환경위험 대책 수립·실행

구분	대책의 내용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 (제11조 제2항)	1. 인권환경위험의 완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일시 중단 또는 변경 2. 인권환경위험의 재발 방지 3.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제공
공급망 내 직접 공급자*의 활동 (제11조 제3항)	1. 인권환경위험이 발생한 해당 공급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 2. 해당 공급자에게 인권환경위험 대책 수립 및 실행 요청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권환경위험이 계속된 경우 계약관계의 종료
공급망 내 간접 공급자의 활동 (제11조 제4항)	가용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상위 공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함
전체 (제11조 제5항)	필요한 경우 인권환경위험대책의 주요 사항을 내부규정 또는 계약조건 등에 반영

*단, 간접공급자라 할지라도 그 인권환경위험이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간접공급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에 따름

3. 인권환경위험 대책 수립·실행 - background

-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 OECD 인권실사 가이드라인: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기업의 평가에 기초하여,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활동을 중단한다. 미래에 발생할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그 목적에 맞는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 UNGP 이행원칙 22에 대한 유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
 - 기업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한 후 그 영향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중략...) 구제책은 다양한 형태로 마련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점에 더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를 하거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타) 보상을 제공하거나, 특정 활동 또는 관계를 중단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기타 형태의 구제책을 택할 수 있다.(후략)

3. 인권환경위험 대책 수립·실행 - background

- 직접공급자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 OECD 인권실사 가이드라인:
 - 기업이 타 기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나 위험 발생에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의 중단이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남겨진 영향들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사업관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위험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은 사업관계를 지속한다; 지속적인 위험 완화를 추구하는 동안 사업관계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완화 시도가 실패한 경우 또는 완화 조치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관계를 단절한다. 사업관계의 단절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적 영향이 잠재적으로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다.(후략)

3. 인권환경위험 대책 수립·실행 - background

- 간접공급자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 기업이 가용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함. 즉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 참고: 독일 공급망법
제3조 실사의무 (2) 실사의무를 충족하는 행위의 적절성은 다음의 사항에 좌우된다.
2. 직접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위험을 야기 또는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영향력 (후략)
- 직접공급자, 간접공급자에 대한 실사의무 차등
 -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계약관계에서 공급을 받는 대신, 중요한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일부러 하청의 하청 업체로 만들 유인
 - 간주규정 두어 부작용 예방

4.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및 환류

- 기업은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결과 대책이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제12조)
 - 참고: UNGP 이행원칙 20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은 대응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추적한다.
 - (a)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다.
 - (b)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내부와 외부 모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5.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공개

- 기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제13조)
 -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결과(제10조)
 -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 및 실행 결과(제11조)
 -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결과(제12조)
- 법안은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드시 독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지 ESG공시에 제13조가 요구하는 보고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함.

6. 분쟁·고위험 지역에서의 기업활동

-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분쟁·고위험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함
-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 정기적 실사와 별개로 인권환경위험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제10조 제3항)
 - 중소기업에도 적용
-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감독기구에 제출함

발제3:

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I

김두나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I

이해관계자 참여, 행정적 책임, 형사 책임

김두나(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

■ 이해관계자

- 인권환경위험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아동·청소년·근로자·지역 주민·주주·투자자 등의 개인(사망한 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 및 이를 옹호하는 단체(제2조 제8호)

■ 입법 배경

- 효과적인 인권환경실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핵심 요소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담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환경실사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2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

▪ 참고 국제규범: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

-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실질적 자문을 받음(이행원칙 18)
- 기업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음(이행원칙 20)
-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우려를 제기하였을 때 기업의 자체적 대응을 공개 발표할 준비가 되어야 함(이행원칙 21)

▪ 인권환경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 의무 (제14조)

-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14조 제1항)

3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청구권

▪ 입법 배경

-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관련 정보는 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기업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정보접근 어려움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 필요

▪ 참고 입법례: 노르웨이 투명성법

- 누구나 기업에 인권과 노동조건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
 -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취한 활동, 체계, 조치에 대한 정보
 - 부정적 영향, 이러한 영향이 발생할 현저한 리스크,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4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청구권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청구권(제15조)

- **정보공개청구권:**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인권환경위험을 식별,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 실행,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
- **공개예외:** 요청하는 정보가 '영업비밀', '개인정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제15조 제2항 전문)
- 그러나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와 재산,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제15조 제2항 후문)
- **이의제기:**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당한 이해관계자는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제15조 제3항)

5

인권환경실사 불이행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

■ 입법 배경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인권환경 실사 이행을 강제함

■ 참고 입법례: 독일 공급망법

- 의무 위반 제거와 방지 위해 문제 시정 계획 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 지시 명령
- 공공사업위탁 발주에서의 배제
- 이행강제금
- 인권실사 불이행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금

6

인권환경실사 불이행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

▪ 시정권고(제28조 제1항)

- 인권환경기업위원회는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기업에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제28조 제1항)

▪ 시정명령 (제29조)

-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제29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수정,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공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그 밖에 인권환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9조 제2항)

7

인권환경실사 불이행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

▪ 입찰참가제한 등(제32조)

- 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의 해당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32조)

▪ 과태료(제44조 제1항)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기업이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제7조 제1항)
- 기업이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않은 경우(제10조제1항 및 제1항)
- 기업이 인권환경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제11조)
- 기업이 공개하여야 할 인권환경실사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제13조제1항),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4조제1항)

▪ 입법 배경

- 기업의 중대한 인권환경실사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통하여 인권환경 실사 이행을 강제함

▪ 벌칙(제42조)

- 기업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개인과 법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업활동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거나, 기업활동이 아동노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인데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제10조 제3항)
-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수정 및 공개, 피해자

발제4:

한국 기업인권실사법 발의안 주요내용 소개 III

박영아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업인권환경실사법안 소개③

권리구제-민사상 손해배상(제39-41조)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권리구제의 중요한 한 축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두 가지 기능
 1. 기업이 인권환경위험을 내재화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 사전 예방 유도
 2.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위험(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효과적 구제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인권환경실사법에 따른 의무의 위반

- 인권환경 침해 야기 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의무(제3조)
- 인권환경실사의무
 - 인권환경실사를 경영체계에 통합할 의무(제6조, 제7조)
 - 고충처리절차를 운영할 의무(제9조)
 -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고, 식별한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대책에 반영할 의무(제10조, 제11조, 제12조)
 -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할 의무(제13조, 제14조, 제15조)
-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위한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제3자의 행위를 기업의 행위로 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 인권환경실사의무는 구체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적 절차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구체적 사안의 사정과 맥락에 맞추어 대처할 것을 요구
 -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실행하였다면 발생시키지 않거나 방지 또는 완화할 수 있었던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손해
 - 기업이 야기 또는 기여한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손해
 -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손해

입증책임의 문제

-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이 인권환경실사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 그러나 기업관계자 아닌 사람에게 기업의 조직구조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기업에 가용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대책을 세울 때 어떤 선택지가 있었는지, 기업의 공급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공급망에 속한 주체들간의 사업관계의 형태와 내용 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국내 민사소송법은 증거개시제도 등을 두지 않아 소송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인과관계 등의 추정

- 청구인이 기업 또는 그 공급망에 속한 기업 등의 활동이 손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 기업이 인권환경실사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정(제40조 제1항)
- 기업이 인권환경실사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인권환경실사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을 막지 못했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면하도록 함(제40조 제2항)

소송비용의 면제

- 법원은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인권환경기업위원회

- 위원회의 주요 업무
 - 이의제기 또는 직권으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관한 조사·심의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지원
 - 분쟁·고위험 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인권환경실사법의 주무부처는 경제정책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하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기획재정부 산하에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 기금은 정부와 정부 이외의 자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과태료 수납액과 운용이익으로 조성
- 기금의 용도
 - 기업에 이한 인권 또는 환경 침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권 또는 환경 침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 그 밖에 피해자의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인권환경기업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총 9인)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 위촉 위원(기획재정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위촉):
 -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국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자 단체 추천 2인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 추천 2인
 - 시민사회단체 추천 2인
 - 상임위원
 - 위원장
-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 의 자 : 정태호·이용빈·김홍걸
윤미향·용혜인·이학영
장혜영·이소영·이원욱
진선미·홍성국·양기대
홍영표·김주영·김종민
(15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바, EU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에 대한 의무화법이 통과되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마련(안 제 6조부터 제9조까지).

나. 인권환경위험의 식별과 그 위험을 식별한 경우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 .실행 및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컨설팅.교육.훈련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무와 필요에 맞춘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이하 “위원회”)설치 규정을 둠(안 제17조).

마. 위원회가 기업에게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

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위원회가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 지역을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해제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과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둠(안 제35조).

아.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둠(안 제42조).

자.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예방하여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국내에 본점소재지를 둔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나. 「상법」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회사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기업활동”이란 기업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제4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2항제2호·제15조·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신의 기업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기업활동을 포함한다.

가. 기업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

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의 지위에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3. “인권환경위험”이란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인권 또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별표 1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나.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별표 2의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보장하는 노동권

다.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별표 3의 국제환경협약 및 이를 이행하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라. 그 밖에 기후 위기와 같이 인권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4. “인권환경실사”란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 하면서 자신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에 다음 각 목의 절차가 포함된다.

가.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나.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 및 실행

다. 가목 및 나목의 평가와 환류

5. “공급망”이란 기업이 재화(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를 할 때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외 경제 주체들과 그 기업이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통한 관계가 포함된다)로서 아래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직접 공급자

나. 간접 공급자

6. “직접 공급자”란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말한다.

7. “간접 공급자”란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직접 공급자 이외의 상대방을 말한다.

8. “이해관계자”란 인권환경위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아동·청소

년·근로자·지역 주민·주주·투자자 등의 개인(사망한 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 및 이를 옹호하는 단체를 말한다.

9. “분쟁·고위험 지역”이란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가 현저히 어려운 지역 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살, 반인간적 범죄, 조직적 차별 등의 국제법 위반 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지정하여 공고한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 지역을 말한다.

10.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제도·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 또는 환

경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상시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일 것.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사용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이 2,000억 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장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제6조(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기업은 이 법에 따른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인권환경실사 이행정책의 수립
2. 인권환경실사 이행책임자의 지정
3. 이 법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계획 및 결과, 인권환경위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상법」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의 설치. 다만, 이미 위와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4.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인권환경실사 이행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인권환경실사 이행책임자의 업무·권한 및 그 밖에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①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책임자 등의 주의의무) ① 경영책임자 등은 이 법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인권환경실사 결과의 보고 및 공시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한다.

②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책임을 게을리하여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제3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 대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고충처리절차의 운영) ①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기업활동이나 공급망 내의 다른 기업(외국기업 및 법인격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라 한다)의 활동과 연관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절차는 이해관계자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고충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기업이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접수한 진정 및 신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업은 진정 및 신고에 포함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른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은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진정 및 신고를 접수한 이해관계자의 신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 및 신고를 통하여 식별한 인권환경위험의 예방, 제거, 완화에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기업은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진정 및 신고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는 기업의 규모 및 고충처리절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환경실사

- 제10조(인권환경위험의 식별) ①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최소 연 1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부문 및 지역과 관련된 인권환경위험, 기업이 생산 및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 및 사업과 관련된 인권환경위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하여 자신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업활동이 아동노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업이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④ 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확인한 인권환경위험에 대하여 각 인권환경위험의 심각성과 발생 개연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실행) ① 기업이 제10조에 따른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자신의 기업활동에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인권환경위험의 완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일시 중단 또는 변경
2. 인권환경위험의 재발 방지
3. 인권 또는 환경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제공

③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 내의 직접 공급자의 활동에서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제10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인권환경 위험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인권환경위험이 발생한 해당 공급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
2. 인권환경위험이 발생한 해당 공급자에게 인권환경위험 대책 수립 및 실행 요청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환경위험이 계속된 경우 자신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도급 등의 관계의 종료

④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 내의 간접 공급자의 활동에서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한 경우 가용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상위 공급자가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위험이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간접 공급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다.

⑤ 기업은 필요한 경우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중요 사항을 내부 규정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업이 자신의 기업활동이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에서 식별한 모든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이후 나머지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및 환류) ① 기업은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인권환경위험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또는 환경 침해 피해자에게 사과, 보상금의 지급 등 권리구제를 제공한 경우 이를 제1항의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결과 대책이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환경실사보고서) ① 기업은 제10조에 따른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결과, 제11조에 따른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 및 실행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이하 “인권환경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자가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의 적절성,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자신의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권 환경기업위원회가 인권환경실사의 적절성,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기업

③ 제1항에 따른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작성 시기·방식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등) ① 기업은 본 장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자의 정보청구권) ①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인권환경위험을 식별, 인권 환경위험 대책의 수립 실행,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와 재산,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1. 요청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당한 이해관계자는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권환경실사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인권환경실사 지원 등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무와 필요에 맞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표준 마련, 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7조(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설치)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심의 및 직권조사
2. 분쟁·고위험 지역의 지정
3.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지원
4.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의 지원, 조정 및 규제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④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국무총리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22조(회의의 의사 및 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분쟁의 해결 등

제25조(이의제기) ① 이해관계인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위원회는 이해관계인과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조사)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의제기 대상 기업(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8조(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그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기업에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기업이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

제29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2.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수정
3.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공개
4.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환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업에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의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제29조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기업은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31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업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32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의 해당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분쟁·고위험 지역

제33조(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 ① 위원회는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 지역을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고위험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분쟁·고위험지역의 해제) ① 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분쟁·고위험지역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절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제35조(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수납액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3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 침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3.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피해자의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3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권리 구제

제39조(손해배상) ① 기업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기업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제3자의 행위를 기업의 행위로 본다.

제40조(인과관계 등의 추정) ① 제39조의 경우 피해자가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 또는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이 손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기업이 이 법 규정을 준수하였어도 손해의 발생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

제41조(소송비용 부담의 특례) 법원은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3항 위반행위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인권환경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인권환경실사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제2조제3호가목 관련)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7. 아동권리협약
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9.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1.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13.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별표2]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제2조제3호나목 관련)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 87호)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
4. 동등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국제 노동기구협약 제100호)
5.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1 호)
6.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8호)
7.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5 호)
8.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9.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7 호)

10.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 81호)
11.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22호)
12. 1976년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44호)
13. 실업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호)
14.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9호)
15.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6호)
16.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47호)
17.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88호)
18.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5호)
19.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1호)
20.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21.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

- 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9호)
22.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42호)
23.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
150호)
24.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
우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6호)
25.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호)
26.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0호)
27.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2호)
28.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
약 제170호)
29.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
185호)
30. 2006 해사노동협약

[별표 3]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환경협약(제2조제3호다목 관련)

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5.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8.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10.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